###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8-150호

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,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08년 7월 31일식품의약품안전청장

##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

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호 본문 중 "표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한자나 외국어는 한 글표시 활자와 같거나 작은 크기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."를 "표시할 수 있다."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단서조항 중 "사용하는 경우"를 "사용하는 경우와 「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재사용되는 유리병(같은 식품유형 또는 유사한 품목으로 사용한 것에 한한다)의 경우"로 한다.

제8조제7호 다목 중 "한글표시 스티커"를 "일괄표시면"으로 한다.

별지 1 제1호 가목 5)다)(3)(나) 중 "(2) 및 (3)"을 "(2)부터 (4)까지"로 한다.

별지 1 제1호 가목 9)다)(3)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(4)부터 (6)을 신설한다.

- (3) 한번에 먹을 수 있도록 포장·판매되는 제품은 총 내용량을 1 회 제공량으로 한다. 이 경우 총 내용량이 해당 식품별 1회 제 공기준량의 200%를 초과하는 때에는 [별지 3]제2호에 따라 식 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(4)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포장·판매되는 식빵, 피자, 과자 등의 제품은 해당 식품별 1회 제공기준량의 3분의 2(67%)이상 2배 (200%)미만의 범위(이하 "1회 제공량 범위"라 한다)의 개수, 조각 또는 컵 등(이하 "단위"라 한다)으로 나눌 수 있는 단위 내용량을 1회 제공량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그 외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.
  - (가) 단위 내용량이 1회 제공량 범위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2 단위 이상을 1회 제공량으로 하되, 1회 제공기준량에 가장 가까운 값이 되도록 단위의 수를 결정한다.
  - (나) 단위 내용량이 1회 제공량 범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량을 2회 제공량 이상으로 하되, 총 제공량은 1회 제공기준량으로 나눈 값에 가장 가까운 값으로 정한다.
- (5) (4)에도 불구하고 각각 해당 제품이 통상적으로 1명이 한번에 먹을 수 있는 내용량인 경우에는 [별지 3]제2호에 따라 식품의 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고, 그 내용량을 1회 제공량으로 할 수 있다. 1회 제공기준량이 설정되지 않은 식품도 또한 같다.
- (6) 서로 유형 등이 다른 2개 이상의 제품이라도 1개의 제품으로

품목제조보고한 제품이라면 그 전체의 양으로 1회 제공량을 산출한다.

(예시 : 라면은 면과 스프를 합하여 1회 제공량으로 함) 별지 1 제1호 가목 9)라)(1)(라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(라) 영양성분 표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[도 2] 표시서식도안을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.
  - ① 1회 제공기준량이 설정된 식품은 1회 제공량에 대한 영양성분을 표시하여야 하고, 그 단위는 개수, 조각 또는 컵 등으로 표시하며, 그 양에 대한 중량(g) 또는 용량(ml)을 괄호로 표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중량 등으로 표시함에 있어 10 g(ml) 미만은 그 값에 가까운 0.1 g(ml) 단위로, 10 g(ml) 이상은 그 값에 가까운 1 g(ml)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.
  - ② 2회 제공량 이상인 제품의 경우에는 총 제공횟수를 표시하여 야 한다. 그 횟수가 3회 이상 5회 미만은 그 값에 가까운 0.5 단위로 표시하여야 하고, 그 외에는 그 값에 가까운 정수로 표시하여야 한다. 이 때 반올림한 값에는 "약"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. (예시: 총 약 3.5회 제공량, 약 2회 제공량)
  - ③ 1회 제공기준량이 설정되지 않은 밀가루, 간장, 소금, 설탕 등식품의 경우에는 100 g(ml)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하되, 총 내용량이 100 g(ml) 미만의 제품은 해당제품의 포장량 당으로하여야 한다. 다만, 영·유아(0~36개월)를 대상으로 하는 영아

- 용 조제식, 성장기용 조제식 또는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은 먹이는 방법에 따라 100 ml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할 수 있다.
- ④ 개별 포장된 2개 이상이 1회 제공량에 해당하는 제품은 그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 포장에 1회 제공량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를 하여야 하고, 개별 포장된 각각의 제품에도 그 내용량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를 할 수 있다.
- ⑤ 1회 제공기준량이 설정되지 않은 식품 중 100 g(ml) 이상 포장된 제품 또는 2회 제공량 이상 포장된 제품은 각각 100 g(ml) 또는 1회 제공량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와 총 내용량에 대한 영양성분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.
- 별지 1 제1호 가목 9)라)(2)(사)①을 다음과 같이 한다.
  - ① 표 2 영양소 기준치표의 비타민과 무기질(나트륨은 제외한다)을 표시하거나 강조표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양소의 명칭, 함량 및 표 2의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(%)을 표시하여야 한다.

별지 1 제1호 가목 10)가) 및 같은 목 10)자)(1)을 각각 삭제한다.

별지 1 제1호 나목 6)마)(1)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다목 1)라)를 삭제한다.

(1) "기구등의 살균·소독제"로 표시하여야 한다.

별지 1 제2호 다목 2) 가) 중 "비가열 섭취 냉동식품"은 "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식품"으로, "가열 후 섭취 냉동식품"은 "가열하여

섭취하는 냉동식품"으로 한다.

별지 1 제3호 15)의 개별표시기준란 2)를 다음과 같이 한다

2) 살균제품은 살균여부에 따라 "살균제품", "주정처리제품"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.

별지 1 제3호의 19) 개별표시기준란 1)가)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경우 영양소 기준치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영양소와 영아용 조제식, 성장기용 조제식 및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중 영·유아(0~36개월) 대상 식품은 영양소의 명칭과 함량만을 표시할 수 있다.

별지 3을 별지와 같이한다.

도 1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[별지 3]

## 1회 제공기준량(제2조제8호 관련)

## 1. 1회 제공기준량

국민이 통상적으로 소비하는 1회 섭취량과 시장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설정한 식품별 1회 제공기준량은 다음과 같다.

미국	1 4	품	④ 1회 제공기준량		(P.4 위 제고리 비이
번호	② 식품군	③ 식품유형			⑤1회 제공량 범위
		과자	30 g		20~59 g
			양갱	30 g	20~59 g
		캔디류	푸딩	100 g	67~199 g
1	과자류		그 밖에 해당식품	10 g	6.7~19 g
		추잉껌	2	g	1.3~3.9 g
		빙과류	100 g	g(ml)	67~199 g(ml)
		빵류	70	g	47~139 g
2	빵 또는 떡류	떡류	100 g		67~199 g
		만두류	150 g		101~299 g
3	코코아가공품류	코코아 가공품류	-		-
3	또는 초콜릿류	초콜릿류	30 g		20~59 g
		잼류			
4	잼류	마멀레이드	20 g		13~39 g
		기타 잼류			
5	설탕	백설탕 갈색설탕			
3	= 0	 기타설탕	_		-
	סרר	액상포도당			
6	포도당	분말·결정포도당	-		-
		액상과당			
7	과당	결정과당	_		-
		기타과당			

w =	① 식	품	④ 1회 제공기준량			
번호	② 식품군	③ 식품유형	④1의 제 	공기순당	⑤1회 제공량 범위	
		물엿	-		-	
8	영류 기타 엿		덩어리엿	30 g	20~59 g	
	<i>X</i> 11	기 <b>니</b> 것	가루엿	5 g	3.4~9.9 g	
		덱스트린	-		-	
9	당시럽류		5	g	3.4~9.9 g	
		프락토올리고당				
		이소말토올리고당				
		갈락토올리고당				
10	올리고당류	말토올리고당	-		-	
		자일로올리고당				
		겐티오올리고당				
		기타올리고당				
		식육 또는 알제품	60	g	40~119 g	
	2] () H]		육포 등	15 g	10~29 g	
11	식육 및 알가공품	식육가공품	육류 말린 것 그 밖에			
	된기 0 급		해당식품	30 g	20~59 g	
		알가공품	50 g		34~99 g	
		어묵				
		어육소시지				
1.5	110-175	어육반제품			• • •	
12	어육가공품	어육살	30 g		20~59 g	
		연육				
		기타 어육가공품				
		두부				
	гнэ	전두부				
13	두부류 또는 묵류	유바	60	g	40~119 g	
	工亡 五市	가공두부	O			
		묵류				
		콩기름				
		옥수수기름				
14	식용유지	(옥배유)	_		-	
		채종유 (유채유 또는				
		(ㅠ새ㅠ 또는				

טן ב	① <b>4</b>	품		ار ا		
번호	② 식품군	③ 식품유형	4)	1의 제	공기준량	⑤1회 제공량 범위
		카놀라유)				
		미강유 (현미유)				
		참기름				
		들기름				
		홍화유				
		(사플라워 또는				
		잇꽃유) 해바라기유				
		목화씨기름				
		(면실유)				
		땅콩기름	_			
		(낙화생유)				
		올리브유				
		팜유류				
		야자유				
		혼합식용유				
		가공유지				
		쇼트닝				
		마가린류				
		(버터, 마가린류)				
		고추씨기름				
		향미유				
		기타 식용유지				
			건조	봉지면	100 g	67~199 g 20~59 g 134~399 g 67~199 g 134~399 g 134~399 g 13~39 g
		국수		용기면	30 g	20~59 g
			비김	건조	200 g	134~399 g
		냉면	건	조	100 g	67~199 g
15	면류	8 2	비김	건조	200 g	134~399 g
		당면		20	g	13~39 g
		<u> </u>	봉기	지면	120 g	80~239 g
		유탕면류	용7	기면	80 g	54~159 g
		교 소디 ㄹ	건	조	100 g	67~199 g
		파스타류	비건	건조	200 g	134~399 g

,ıl =	① 식	품	④ 1회 제공기준량		
번호	② 식품군	③ 식품유형			⑤1회 제공량 범위
16	다류	침출차 액상차 고형차	100 ml*		67~199ml*
17	커피	볶은커피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	100	ml <sup>*</sup>	67~199 ml*
		과일·채소류음료	농축과·채즙 과·채주스 과·채음료	200 ml*	134~399 ml*
18	음료류	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	150 200		101~299 ml 134~399 ml 67~199 ml
		인삼·홍삼음료	150		101~299 ml
		기타음료	혼합음료 추출음료 음료베이스	150 ml <sup>*</sup>	101~299 ml*
19	<del>특수용</del> 도 식품	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, 기타 영·유아식 특수의료용도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	- 40 g		- 27~79 g
		임산:수유부용 식품	20 g		13~39 g
20	장류	메주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한식된장 된장 조미된장 고추장 조미고추장		-	-

บไ	① 식	품	④ 1회 제공기준량		
번호	② 식품군	③ 식품유형			⑤1회 제공량 범위
		춘장			
		청국장			
		혼합장			
		기타장류			
		식초			
		소스류 토마토케첩	_		-
21	조미식품	카레	레토르트식품 기타	200 g 25 g	134~399 g 17~49 g
		고춧가루 또는 실고추		· ·	
		향신료가공품	<u>-</u>		-
		복합조미식품			
		젓갈			
	22 젓갈류	양념젓갈			
22		액젓	_		-
		조미액젓			
		식해류			
		절임류	장류절임 중 짱아찌	15 g	10~29 g
23	절임식품		그 밖의 해당식품	25 g	17~49 g
		당절임	25 g		17~49 g
		농산물조림			
24	조림식품	수산물조림	_		-
		축산물조림			
		탁주			
		약주	-		
		청주			- 134~399 g 17~49 g - - 10~29 g
		맥주			
		과실주			
25	주류	소주	_		-
		위스키	-		
		브랜디	-		
		일반증류주	-		
		리큐르	_		
		기타 주류			

	① 식	품	④ 1회 제공기준량		
번호	② 식품군	③ 식품유형			⑤1회 제공량 범위
		조미건어포류	15 g		
26	건포류	건어포류			10~29 g
		기타 건포류			
		땅콩 또는 견과류	버터, 마가린류	5 g	3.4~9.9 g
		가공품	너트류	10 g	6.7~19 g
		캅셀류	-		-
		전분	-		-
		기 케기 고프로	건과류	5 g	3.4~9.9 g
		과·채가공품류	기타	30 g	20~59 g
		조미김	2 g		1.3~3.9 g
		튀김식품	-		-
		벌꿀	20 g		13~39 g
		모조치즈	20 g		13~39 g
		식물성크림	5	g	3.4~9.9 g
27	기타	추출가공식품	80 g		54~159 g
	식품류	팝콘용 옥수수 가공품	30 g		20~59 g
		식염			
		밀가루	-		-
	찐쌀	찐쌀			
		생식류	40	g	27~79 g
		시리얼류	30		20~59 g
		얼음류	-		-
			도시락, 김밥류 등	1식	1식
		즉석섭취·편의식품류	햄버거, 샌드위치류	150 g	101~299 g
			그밖의 해당식품	1식	1식
28	규격 외 일반 가공식품				-
<u></u> ГІ		으리르 주 보마.노추			

<sup>※</sup> 다류, 커피 및 음료류 중 분말·농축액 등의 제품은 1회 제공기준량으로 함 유된 값을 기준으로 한다.

### 2. 그 밖에 1회 제공량 설정시 통보사항

제1호에 따라 식품별 1회 제공기준량을 적용할 수 없거나 별도의 1회 제공기준량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에는 제품생산 개시전이나 수입 신고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다음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.

### 【제출서류】

- ① 대상식품(제품명, 식품유형, 업소명 및 소재지 등)
- ② 목적(신설 또는 변경)
- ③ 첨부자료
  - ⑦ 성분배합비율 및 제조방법설명서
  - ① 샘플용으로 만든 제품 또는 그 제품의 사진
  - 대 해당 식품 또는 유사식품의 국내·외 현황자료
  - ① 그 밖에 해당 식품의 1회 제공기준량 설정을 위한 근거자료 등 (예: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, 섭취량 실태조사결과 등)

# <u>신·구조문대비표</u>

현행	개정안
제 <b>5조(표시방법)</b> 식품등(수입되는	제5조(표시방법)
식품등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	
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	2
잉크·각인 또는 소인 등을	
사용하여 한글로 하여야 하나	
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	
한자나 외국어는 혼용하거나	
병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, 이	
경우 한자나 외국어는 한글표시	
활자와 같거나 작은 크기의	
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	
수입되는 식품등과 상표법에	
의하여 등록된 상표는 한자나	
외국어를 한글표시활자보다 크게	
표시 할 수 있다.	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4. 용기나 포장은 다른 제조업소의	4
표시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	
아니된다. 다만 식품에 유해한	
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용기	
로서 일반시중에 유통 판매할	

목적이 아닌 다른 회사의 제품 원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<u>사용</u> <u>하는 경우</u>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.

5. (생략)

- 1. ~ 6. (생략)
- 7. 수출입식품등에 대한 표시방법 가.·나. (생 략)
  - 다.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표시사항을 주표시면에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글표시 스티커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.

라 · 마 (생략)

## [별지 1]

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(제9조관련)

- 1. 식품등의 일반기준
  - 가. 식품(수입식품을 포함한다)
  - 1) ~ 4) (생 략)

							. 1	· ^
							<u>스</u>	풍
	<u>하는</u>	: 경	우와	「フ	1원 [	철약고	가 자	활
	용	촉진	에 된	<u> </u>	법퉅	<u></u>	) II	라
	재스	P용 Z	i는 ·	유리	병(같	같은	식품	유
	형	또는	. 유	<b>나</b> 한	품두	무으로	己人	용-
	한.	것에	한힌	다)	의 경	] 우 <b></b>		
년 제 <b>대</b>	5. <i>(</i> ই	ᅧ행고	가 같· <b>사항</b> 의	음)				
YIJ C	)(-	TT / II /	11 % ~	1	73	ㅋ네	)	
-								
-								
_								
_								
1			(현행		간음\	١		
			`		ĺ		∡ l Hl	. HJ
/			식품				·/  '7	띱
	가.	• 나.	(현호	행과	같음	<del>(</del> )		
	다.							
						일괄	丑人	<u>면</u>
					-			

라 · 마 (현행과 같음)

### [별지 1]

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(제9조관련)

- 1. 식품등의 일반기준
- 가. 식품(수입식품을 포함한다)
  - 1) ~ 4) (현행과 같음)

- 5)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가)·나) (생 략)
  - 다) 세부표시기준
  - (1) · (2) (생략)
  - (3) 품질유지기한 대상식품 및 표시방법
    - (가) (생략)
    - (나) 품질유지기한은 "00년00 월00일", "00.00.00", "0000년00월00일" 또는 "0000.00.00"로 표시하여야 하고, 그 밖의 표시사항은 나) (2) 및 (3)의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.
      - (4) ~ (6) (생 략)
- 6) ~ 8) (생 략)
- 9) 영양성분 등
  - 가) · 나) (생 략)
  - 다) 표시단위 및 1회 제공량 산 출기준
    - (1) · (2) (생략)
  - (3) 1회 제공량은 [별지 3]에서 정한 해당 식품별 1회 제공 기준량의 3분의 2(67%)이상 2배(200%)미만에서 해당 식 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1회

- 5)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가)·나) (현행과 같음)
  - 다) 세부표시기준
  - (1) · (2) (현행과 같음)
- (3) 품질유지기한 대상식품 및 표시방법
  - (가) (현행과 같음)

(나)		
<u>나)</u>	(2)부터	<u>(4)까구기</u>

- (4) ~ (6) (현행과 같음)
- 6) ~ 8) (현행과 같음)
- 9) 영양성분 등
- 가) · 나) (현행과 같음)
- 다) 표시단위 및 1회 제공량 산 출기준
  - (1) · (2) (현행과 같음)
  - (3) 한번에 먹을 수 있도록 포 장·판매되는 제품은 총 내 용량을 1회 제공량으로 한 다. 이 경우 총 내용량이 해 당 식품별 1회 제공기준량

섭취하기에 적당한 양으로 의 200%를 초과하는 때에는 산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 품의 내용량 등에 따라 다 음과 같이 1회 제공량을 산 출할 수 있다.

- (가) 제품의 내용량이 해당 식품별 1회 제공기준량의 3분의 2(67%) 미만인 경 우에는 2개 이상의 제품 을 1회 제공량으로 한다. 이 경우 1회 제공량에 해 당되는 제품수는 2개 이 상 제품의 총 내용량이 1 회 제공량에 가장 가까운 값이 되도록 정한다.
- (나) 제품의 내용량이 해당 식 품별 1회 제공기준량의 2 배(200%) 이상인 경우에 는 그 내용량을 2회 제공 량 이상으로 하되, 총 제 공량은 총 내용량을 1회 제공량으로 나눈 값에 가 장 가까운 값으로 정한다. 다만, 2회 제공량 이상인 제품이 통상적으로 1인이 한번에 먹을 수 있는 분 량으로 개별 포장된 경우

[별지 3]제2호에 따라 식품 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.

- <u>에는 1회 제공량으로 할</u> 수 있다.
- (다) 1회 제공기준량이 섭취시 기준에 따른 사용량으로 설정된 식품은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품섭취방법에 1회 섭취량을 표시하고 그양을 1회 제공량으로 한다.
- (라) 서로 유형 등이 다른 2개 이상의 제품이라도 1개의 제품으로 품목제조보고한 제품이라면 그 전체의 양으 로 1회 제공량을 산출한다 (예시 : 라면은 면과 스프를 합하여 1회 제공량으로 함)

<신 설>

(4)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포장·판매되는 식빵, 피자, 과자 등의 제품은 해당 식품별 1회 제공기준량의 3분의 2(67%)이상 2배(200%)미만의 범위(이하 "1회 제공량범위"라 한다)의 개수, 조각또는 컵등(이하 "단위"이라한다)으로 나눌수 있는 단위 내용량을 1회 제공량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그 외

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 여야 한다.

- (가) 단위 내용량이 1회 제공
   량 범위 미만에 해당하는
   경우에는 2 단위 이상을
   1회 제공량으로 하되, 1회
   제공기준량에 가장 가까
   운 값이 되도록 단위의
   수를 결정한다.
- (나) 단위 내용량이 1회 제공 량 범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량을 2 회 제공량 이상으로 하되, 총 제공량은 1회 제공기 준량으로 나는 값에 가장 가까운 값으로 정한다.
- (5) (4)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 상적으로 1명이 한번에 먹을 수 있는 내용량인 경우에는 [별지 3]제2호에 따라 식품의 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고, 그 내용량을 1회 제공량으로 할 수 있다. 1회 제공기준량 이 설정되지 않은 식품도 또 한 같다.

<신 설>

<신 설>

- 라) 표시방법
- (1) 공통사항
  - (가) ~ (다) (생략)
  - (라) 영양성분 표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[도 2] 표시 서식도안을 사용하여 표시 하여야 한다.
    - 제품은 1회 제공량에 대한 영양성분을 표시하여야 한 다.
    - ② 1회 제공기준량이 설정되 지 않은 식품의 경우에는 100g(ml)당 함유된 값으로 하되, 그 내용량이 100g(ml) 미만의 제품은 해당제품의 포장량 당으로 하여야 한다.
    - (예시) 100g(ml) : 밀가루, 간

- (6) 서로 유형 등이 다른 2개 이상의 제품이라도 1개의 제 품으로 품목제조보고한 제품 이라면 그 전체의 양으로 1 회 제공량을 산출한다 (예시 : 라면은 면과 스프를 합하여 1회 제공량으로 함)
- 라) 표시방법
- (1) 공통사항
- (가) ~ (다) (현행과 같음)
- (라) 영양성분 표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[도 2] 표시 서식도안을 사용하여 표시 하여야 한다.
- ① 1회 제공기준량이 설정된 ② 1회 제공기준량이 설정된 식품은 1회 제공량에 대한 영양성분을 표시하여야 하 고, 그 단위는 개수, 조각 또는 컵 등으로 표시하 며, 그 양에 대한 중량(g) 또는 용량(ml)을 괄호로 표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중량 등으로 표시함에 있 어 10 g(ml) 미만은 그 값 에 가까운 0.1 g(ml) 단위 로, 10 g(ml) 이상은 그 값

- ③ 개별 포장된 2개 이상이 표시하여야 한다. 1회 제공량에 해당하는 식 품은 그 제품의 최소 판매 단위별 용기 · 포장에 1회 제공량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를 하여야 하고, 개별 포장된 각각의 제품에도 그 내용량에 따른 영양성 분 표시를 할 수 있다.
- ③ 개별 포장된 2개 이상이 1회 제공량에 해당하는 식 품은 그 제품의 최소 판매 단위별 용기 · 포장에 1회 제공량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를 하여야 하고, 개별 포장된 각각의 제품에도 그 내용량에 따른 영양성 분 표시를 할 수 있다.
- ④ 2회 제공량 이상 또는 1 회 제공기준량이 설정되지 않은 식품중 100g(100ml) 이상으로 포장된 제품은 그 제품의 1회 제공량 또 는 100g(100ml)에 대한 영 양성분 표시와 총 내용량

- <u>장, 소금, 설탕 등</u> 에 가까운 1 g(ml) 단위로
  - ② 2회 제공량 이상인 제품 의 경우에는 총 제공횟수 를 표시하여야 한다. 그 횟 수가 3회 이상 5회 미만은 그 값에 가까운 0.5단위로 표시하여야 하고, 그 외에 는 그 값에 가까운 정수로 표시하여야 한다. 이 때 반 올림한 값에는 "약"을 함 께 표시하여야 한다.

(예시: 총 약 3.5회 제공량, 약 2회 제공량)

> ③ 1회 제공기준량이 설정되 지 않은 밀가루, 간장, 소 금, 설탕 등 식품의 경우 에는 100 g(ml)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하되, 총 내용 량이 100 g(ml) 미만의 제 품은 해당제품의 포장량 당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영·유아(0~36개월)를 대 상으로 하는 영아용 조제 식, 성장기용 조제식 또는 <u>특수의료용도등식품은</u> 먹

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를 함께 할 수 있다.

- (가) ~ (바) (생 략)
- (사) 그 밖에 영양성분에 대한 표시
  - ① 비타민과 무기질(나트륨은

- 이는 방법에 따라 100 ml 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할 수 있다.
  - ④ 개별 포장된 2개 이상이 1회 제공량에 해당하는 제 품은 그 제품의 최소 판매 단위별 용기 · 포장에 1회 제공량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를 하여야 하고, 개별 포장된 각각의 제품에도 그 내용량에 따른 영양성 분 표시를 할 수 있다.
  - ⑤ 1회 제공기준량이 설정되 지 않은 식품 중 100 g(ml) 이상 포장된 제품 또는 2회 제공량 이상 포 장된 제품은 각각 100 g(ml) 또는 1회 제공량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와 총 내용량에 대한 영양성분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.
- (2) 영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 (2) 영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
  - (가) ~ (바) (현행과 같음)
  - (사) 그 밖에 영양성분에 대한 표시
  - ① 표 2 영양소 기준치표의

제외한다)은 특수용도식품의 경우에는 표 2의 영양소기 준치의 항목 모두를 표시할 수 있으나, 그 외의식품의 경우에는 비타민 A, D, E, C, B1, B2, 나이아신, B6, 엽산, 칼슘, 인, 철 및 아연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, 이를 표시하거나 강조표시를 하는때에는 당해 영양소의 명칭, 함량 및 표 2의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(%)을 표시하여야 한다.

② ~ ④ (생 략)

마) · 바) (생 략)

- 10) 기타표시사항
- 가) 회수병을 사용하는 제품의<삭 제>경우에는 빈용기보증금에 관한사항을 용기 또는 병마개에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.
- 나) ~ 아) (생 략)
- 자) 인삼 또는 홍삼 등을 원료로 사용하여 인삼 및 홍삼성분을 함유한 제품에 대한 표시 기준은 다음과 같다.
  - (1) 인삼제품의 포장에 인삼도

비타민과 무기질(나트륨은 제외한다)을 표시하거나 강조표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양소의 명칭, 함량 및 표 2의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(%)을 표시하여야 한다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마)·바) (현행과 같음)10) 기타표시사항<삭 제>

,		,	(현행과 	,	
-					
-					
_	사	제 >	>		

안을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[도 1]의 인삼제품의 표준도 안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인삼을 상징하는 도안을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.

- (2) ~ (7) (생략)
- 나. 식품첨가물(수입식품을 포함 나. 식품첨가물(수입식품을 포함 한다)
  - 1) ~ 5) (생략)
- 6) 기타표시사항
  - 가) ~ 라) (생 략)
  -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.
  - 표시하고 기구등의 살균 · 소독제 한시적 기준 및 규 격인정번호를 함께 표시하 여야 한다.
  - (2) (생략)
- 또는 용기포장
- 1) 공통사항
  - 가) ~ 다) (생 략)
  - 라) 비내수용 전분제 기구 또는

- (2) ~ (7) (현행과 같음)
- 한다)
- 1) ~ 5) (현행과 같음)
- 6) 기타표시사항
- 가) ~ 라) (현행과 같음)
- 마) 기구등의 살균·소독제는 마) 기구등의 살균·소독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.
  - (1) <u>"기구등의 살균·소독제"로</u> (1) <u>"기구등의 살균·소독제"로</u> 표시하여야 한다.

- (2) (현행과 같음)
- 다. 기구 또는 용기포장(수입기구 다. 기구 또는 용기포장(수입기구 또는 용기포장
  - 1) 공통사항
  - 가) ~ 다)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용기·포장은 "비내수성 전분 제"라고 표시하여야 한다.

- 2) 유형별 세부표시사항(생 략)
- 2. 장기보존식품의 표시기준

가 · 나 (생략)

다. 냉동식품

- 1) (생략)
- 2) 표시사항
- 가) 냉동식품은 유형에 따라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식품은 "비가열섭취 냉동 식품"으로,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은 "가열 후 섭취 냉동식품"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.
- 나) ~ 바) (생 략)
- 3. 식품별 개별표시기준
- 1) ~ 14) (생 략)
- 15) 면류
- 가)국수 나)냉면 다)당면 라)유탕면류 마)파스타류
- 1) (생략)
- 2) 살균여부에 따라 "살 균제품", "주정처리제 품" 또는 "비살균제 품"으로 구분표시하여 야 한다.

- 2) 유형별 세부표시사항 (현행과 같음)
- 2. 장기보존식품의 표시기준

가 · 나 (현행과 같음)

다. 냉동식품

- 1) (현행과 같음)
- 2) 표시사항

アト)	
<u>"</u> 가열하지 않고	섭취
하는 냉동식품"	
"가열하여	섭취
<u>하는 냉동식품</u> "	

나) ~ 바) (현행과 같음)

- 3. 식품별 개별표시기준
- 1) ~ 18) (현행과 같음)
- 15) 면류
- 가)국수 나)냉면 다)당면 라)유탕면류 마)파스타류
- 1) (현행과 같음)
- 2) 살균제품은 살균여부 에 따라 "살균제품", "주정처리제품"으로 구분표시하여야 한다.

- 16) ~ 18) (생략)
- 19) 특수용도식품
- 1) 공통사항 가) 법 제7조에 따라 식 품의 기준 및 규격에 서 정한 영양성분은 "영양성분의 표시방 법"에 따라 표시하여 야 한다. 이 경우 영 양소 기준치가 설정 가)영아용 되어 있지 아니한 영 조제식 양소는 그 명칭과 함 량만을 표시하여야 나)~사) (생략) 한다.(특수용도식품 공통사항) 나) (생 략) 2) ~ 8) (생 략)
- 20) ~ 29) (생 략)

### [별지 3]

1회 제공기준량(제2조제8호관련)

1. 1회 제공기준량

별첨: [별지 3]

2. 그 밖에 제1호에서 적용할 수 2. 그 밖에 1회 제공량 설정시 통 없는 식품의 1회 제공기준량

- 16) ~ 18) (현행과 같음)
- 19) 특수용도식품

	1) 공통사항
	フト)
	,
	이 경우 영
가)영아용	양소 기준치가 설정
조제식	되어 있지 아니한 영
나)~사)	양소와 영아용 조제
(현행과같	식, 성장기용 조제식
음)	및 특수의료용도등식
12)	<u>품 중 영·유아(0~36개</u>
	월) 대상 제품은 영양
	소의 명칭과 함량만을
	표시할 수 있다.(특수
	용도식품 공통사항)
	나) (현행과 같음)
	2) ~ 8) (현행과 같음)

20) ~ 29) (현행과 같음)

### [별지 3]

1회 제공기준량(제2조제8호관련)

1. 1회 제공기준량

별첨 : [별지 3]

보사항

공기준량을 적용할 수 없거나 별도의 1회 제공기준량이 필요 한 식품의 경우에는 다음의 자 료를 제출하여 식품의약품안전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# 【제출서류】

- ① · ② (생 략)
- ③ 첨부자료
  - ⑦ 성분배합비율 및 제조방법 설명서
  - (4세 이상)가 해당 식품에 대한 섭취 자료
  - © 해당 식품의 시장조사 자료
  - 리 그 밖에 해당 식품의 1회 제공기준량 설정을 위한 근 거자료 등
- 圖案)

제1호에 따라 식품별 1회 제 제1호에 따라 식품별 1회 제 공기준량을 적용할 수 없거나 별도의 1회 제공기준량이 필요 한 식품의 경우에는 제품생산 개시전이나 수입신고전에 식품 의약품안전청장에게 다음의 사 항을 통보하여야 한다.

### 【제출서류】

-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- ③ 첨부자료

7	 	 	
_			

- ⑤ 85명 이상 주요 소비대상자⑥ 샘플용으로 만든 제품 또는 그 제품의 사진
  - ④ 해당 식품 또는 유사식품의 국내 · 외 현황자료

(	예 : 국도	민건강영역	양조시
· 결과,	섭취량	실태조	사결괴
등)			

[도 1] 인삼(人蔘)의 표준도안(標準 [도 1] 인삼(人蔘)의 표준도안(標準 圖案)

<삭 제>

